

제 416 호

1973.11.21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편집 : 문화공보실장 김진호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5-6090

시보

차례

이 시보를 발간함에 있어
 권별의 목차를 정리함.
 서울특별시 시민과광

규칙		
제 1329 호	서울특별시 사유재산규칙 폐지규칙.....	3
제 1330 호	서울특별시 사유재산 심의규칙중 개정규칙.....	3
제 1331 호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중 개정규칙.....	4
◎ 고시		
제 176 호	도시계획 (재개발구역 및 특정가구 정비 지구) 지적 정정고시.....	7
제 4 호	지적공부복구 (공시)	8
◎ 사령	9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규 칙

서울특별시 시유재산규칙 폐지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73. 11. 21

서울특별시 장

◎ 서울특별시규칙제 1329 호

서울특별시시유재산규칙 폐지규칙

서울특별시규칙제 155 호 (57.3.12) 서
울특별시 시유재산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시유재산 심의회규칙 중 개
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73. 11. 21

서울특별시 장

◎ 서울특별시규칙제 1330 호

서울특별시시유재산심의회
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시유재산심의회 규칙중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 조 (목적) 이규칙은 서울특별시 재
무회제규칙 제 126 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시유재산심의회 (이하 "심의

회"라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 2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2 조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산의교환 및 기부채납의 적
정여부
2. 재산의취득, 처분 및 교환가격
의 사정
3. 기부채납재산의 무상사용년한
사정
4. 대부료 및 임대료 사정

제 3 조 제 2 항중 "예산과장"을 "대
산담당관"으로, "사무과장"을 "도
시행정과장"으로, "건축제 1 과장"을
"주택행정과장"으로, "관리제 1 과
장"을 "건설행정과장"으로 한다.

제 8 조를 삭제한다.

제 9 조중 "10 만원이하"를 "50 만원
이하"로 한다.

제 10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0 조 (간사및서기) ① 심의회의 사무
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를 둔다.

② 간사는 판재과장이 되고 서기는
판재과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
촉한다.

제 11 조중 "당해과에서는"을 삭제한다

부 칙

이규칙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중 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73. 11. 21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규칙제. 1331 호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재무회계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18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18 조 (시유재산의 총괄및 관리자 지정) ①시유재산은 시장명령을 받아 재무국장아 이를 총괄한다.

②전항에서 총괄이라 함은 시유재산의 취득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시유재산에 관한 사무의 통일과 그 현황을 명료히하며 필요한 조정을 함을 말한다.

③시유재산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이를 관리한다.

1. 본청에서 직접 사용하는 공용 또는 공공용재산 및 각사업장은 그 주관국장

2. 청소에서 직접 사용하는 공용 또는 공공용재산은 그청소의장(동은 그 관할구청장)

3. 보안림은 녹지국장

4. 시유임야에 대하여는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관리인

5. 보통재산은 재무국장

④전항 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시유재산에 대하여는 그 주관국장이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 118 조의 2 를 다음과같이 신설한다.

제 118 조의 2 (총괄자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총괄자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리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보고를 요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명을 받아 그 용도의 폐지나 변경을 명하거나 현관리자의 관리재산을 다른 관리자에게 이관하게하며 기타 재산관리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관리자는 재산의 취득변경 및 매각의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총괄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가로부터 관리의 위임을 받은재산에 대하여도 전 2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24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24 조 (시유재산의 소속 및 용도 변경등 총괄) ①시유재산의 소속 및 용도의 변경이나 폐지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재무국장의 사전협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1. 재산의 표시
- 2. 목적 또는 사유
- 3. 도면
- 4. 기타 필요한 서류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공용 또는 공공용재산의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관리자는 지체없이 이를 재무국장을 거쳐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으로서 반환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26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26 조 (시유재산심의회) ①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유재산심의회 (이하 "심의회" 라한다) 를 둔다.

②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126 조의 2 를 다음과같이 신설한다.

제 126 조의 2 (기부채납). 시유재산에 편입할 물건의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청소의 장은 다음 사항을 갖춘 기부서에 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진달하여야 한다.

- 1. 기부자의 주소, 성명
- 2. 기부의 목적
- 3. 물건의 표시
- 4. 가격
- 5. 도면
- 6. 기타 필요한 서류

제 126 조의 3 을 다음과같이 신설한다.

제 126 조의 3 (기부채납재산의무상사용년한산정기준) ①영 제 71 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채납된 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무상사용기간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무상사용기간은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년간 임대료액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 (국공유지가액 × 임대료율 = 년간임대료)
 (기부채납시 설물 ÷ 년간임대료 = 무상사용년한)

제 130 조를 삭제한다.

제 134 조를 다음과같이 한다.

제 134 조 (재산가 격결정 및 유효기간)

①시 유재산을 취득, 처분, 임대교환 및 기부채납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 감정원 또는 기타 감정에 관한 전문적기술을 가진 기관의 감정가격을 참작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그 가격을 결정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재산가격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하며 유효기간의 경과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제 1항에 따라 대부하는 재산과 철거민 정착자 및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결정으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1. 6개월이 경과하면 재사정
- 2. 1년이 경과하면 재감정

제 136 조를 다음과같이 한다.

제 136 조 (대부료납기) 시유재산의 대부료는 년 또는 월별로 정기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년분 또

는 수개월분을 산납시킬 수 있다.

제 136 조의 2 를 다음과같이 신설한다.

제 136 조의 2 (매각재산대금납부) ①

매각재산의 대금은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부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일시대금 납부기간은 3개월이내로 하고 동기간내에 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3할 공제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 1년경과시에는 해약조치할 수 있다.

제 139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39 조 (재산증감통지 및 현재액보고)

①시유재산의 증감변동의 통지가 있을 때에는 총괄자는 지체 없이 대장 및 도면을 정비하고 증감변동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소관시유재산의 증감상황을 매년 12월 31일현재와 매 5년 12월 31일현재로 이를 작성하여 익년 3월 31일까지 재무국장을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제 176 호

도시계획 (재개발구역 및 특정
가구정비지구) 지적정정고시

- 1. 서울특별시고시제 164 호 (73.10.18) 로 고시된 도시계획 (재개발구역 및 특정 가구 정비지구) 지적고시 중 서울역 - 서대문지구 일부토지에

대하여 도면표시상 착오가 있었으므로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및 서대문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재개발구역 및 특정 가구정비지구) 지적정정초서

번호	지 구 명	위 치	면 적	정정사항	비 고
2	서울역-서대문1지구	충정로1가, 의주로1가 일부지역	7,948	지구계	도면표시 착오
	" 2 "	의주로1가, 순화동 일부지역	10,631	"	"
	" 3 "	의주로1가, 순화동 일부지역	10,912	"	"
	" 5 "	의주로2가, 순화동 일부지역	12,592	"	"
	" 8 "	순화동 일부지역	7,700	"	"

1973. 11. .

서울특별시장

성 동 구

(공 시 문)

영동공시제 4 호

지적 공부 복구 (공 시)

1. 공시 기간

자. 1973. 11. 15

지. 1973. 11. 19 (15 일간)

2. 공시 지번별도서 열람장소: 각구 세무 1 과 및 각 출장소세무과

3. 지적공부 열람장소: 영동출장소

4. 주의 사항

가. 지적공부 내용에 착오가 있을 때에는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이의 신청할 것.

나. 공시기간중에 이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의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기간경과후에도 지번별로서 내용과 같이 확정됨.

다. 기타 상세한 것은 영동출장소에 문의할 것.

1973. 11. 15.

영 동 출 장 소

<p>사 령</p>	<p>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행정서기에 임함. 5호봉을 급함.</p>
<p>© 1973.11.20</p> <p>근우회관 지방행정사 박국자 지방행정사무관에 임함. 2호봉을 급함. 근우회관장에 보함.</p>	<p>서대문구 근무를 명함. 경북안동시 지방행정 이혁구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5호봉을 급함.</p>
<p>성동구 지방건축 황인무 천호출장소 기원</p> <p>성동구 영동출장소 근무를 명함.</p>	<p>성북구 근무를 명함. 경북영일군 지방행정 백의준</p>
<p>성북구 지방건축 한경덕 기원보</p> <p>성동구 천호출장소 근무를 명함.</p>	<p>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행정서기에 임함. 8호봉을 급함.</p>
<p>마포구 지방건축 김선방 기원보</p> <p>성북구 근무를 명함.</p>	<p>성북구 근무를 명함. 성동구보건소 지방약무 이진승 기사보</p>
<p>충북청원군 지방행정 김부웅 서기</p> <p>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행정서기에 임함. 3호봉을 급함.</p>	<p>서대문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서대문병원 지방약무 이진형 기사보</p>
<p>마포구 근무를 명함. 강원도평창군 지방행정 정재섭 주사보</p>	<p>성북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성북구보건소 지방약무 김정식 기사보</p>

◎ 1973.11.25.

충북 지방농림
괴산군철성면 기원보 이 사 원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농림기원보에 임함.

6 호봉을 급함.

마포구 근무를 명함.

충북 지방농림
괴산군철성면 기원보 한 대 수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농림기원보에 임함.

3 호봉을 급함.

남산공원관리사무소 근무를 명함.

◎ 1973.12.1.

경북청송군 지방행정
주사보 이 성 문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5 호봉을 급함.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

서울특별시 장